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입니다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제18조의2에 따라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, 그 청구 사유를 바탕으로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2.6%에서 27%로 상향하는 한편, 측정 단위와 항목 중 인구수를 “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 수”로 변경하고, 문화·관광 지표 및 행정수요 지표를 신설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.
- 청구 사유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공동재산세 상향 및 배분방식 변경안의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·군 조정교부금의 재원(도세의 27%)에 준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보통세의 22.6%에서 27%로 하고,

자치구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각 자치구의 문화적, 관광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조정교부금 재원은 보통세의 22.6% 규정되어 있으나, 이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입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,

본 개정안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,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조정 체계 확립, 지방자치의 본질 강화,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
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투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주민의 청구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,

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현실과

균형있는 서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

본 개정안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

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